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09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박덕흠 · 윤상현

구자근 · 홍석준 · 장혜영

신원식 · 이명수 · 이종성

추경호 · 윤두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,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·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 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읽으려면 인쇄물 음성변 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 당하는 실정임.

이에,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·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을 폐지하고, 대신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·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적으로 표시할수 있도록 함(안 제65조제4항).
- 나.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하도록 함(안 제65조제11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본문 중 "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"를 "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표시하는 것 으로 대신할 수 있다"를 "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·점자 등으 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4항 단 서에 따라 제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하여야 한다.

제256조제5항제5호 중 "제65조제12항"을 "제65조제1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

법 시행 후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③ (생	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	4
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	
선거인(선거인으로서 「장애인	
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	
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	
이 조에서 같다)을 위한 선거	
공보(이하"점자형 선거공보"라	
한다) 1종을 제2항에 따른 <u>책</u>	<u>책</u>
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	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
<u>서</u>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	<u>로</u>
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	
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	
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.	
제출하여야 하되, 책자형 선거	
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	
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	
성 바코드를 <u>표시하는 것으로</u>	<u>부</u> 가하여 표시할 수
대신할 수 있다.	<u>있다</u> .
⑤ ~ ⑩ (생 략)	⑤ ~ ⑩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 </u>
	는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

① ~ ③ (생 략)

-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 ㅈ ~ ④ (생 략)
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5. 제64조제8항(<u>제65조제12항</u>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 하여 선거벽보·선거공보 또 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 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
 - 6. ~ 12. (생략)

_	
	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
	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
	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
]	내용을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
	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
	저장한 저장매체를 제4항 단서
-	에 따라 제출한 점자형 선거공
_	보와 같이 발송하여야 한다.
($ \underline{ \mathbb{D}} \sim \underline{ \mathbb{Q}} $ (현행 제 $ \mathbb{N} $ 11항부터 제
-	13항까지와 같음)
H) 2	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,	~ ④ (현행과 같음)
(5
-	
-	
-	
-	1. ~ 4. (현행과 같음)
Ę	5 <u>제65조제13항</u>

6. ~ 12. (현행과 같음)

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